

화성비봉 A-3BL(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지침서

2024. 4.



< 목 차 >

1. 공모 목적	1
2. 공모 개요	1
3. 응모 자격	3
4. 공모 일정	4
5. 제출 서류	6
6. 심의 방법	10
7. 공모 조건	10
8. 계약 사항	13
9. 당선자의 권리 및 의무	13
10. 기타 유의사항	14

【제출서식】

· 응모 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
· 서약서	[서식 3]
·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5]
· 작품 설명서	[서식 6]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서식 7]
· 도판	[서식 8]
· 작가경력서	[서식 9]
· 이의신청서	[서식 10]
· 구조검토서(필요시)	자유서식

1. 공모 목적

- 본 지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규정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공공주택지구 내 A-3BL(화성비봉 A-3BL)’에 설치할 미술작품의 공개모집 업무 절차와 그 기준을 규정함에 있음.

※ (관련규정)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2. 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 화성비봉 A-3BL(공동주택) 미술작품(1작품) 제작·설치

나. 공모기간 : 2024. 4. 8. ~ 2024. 5. 7. (30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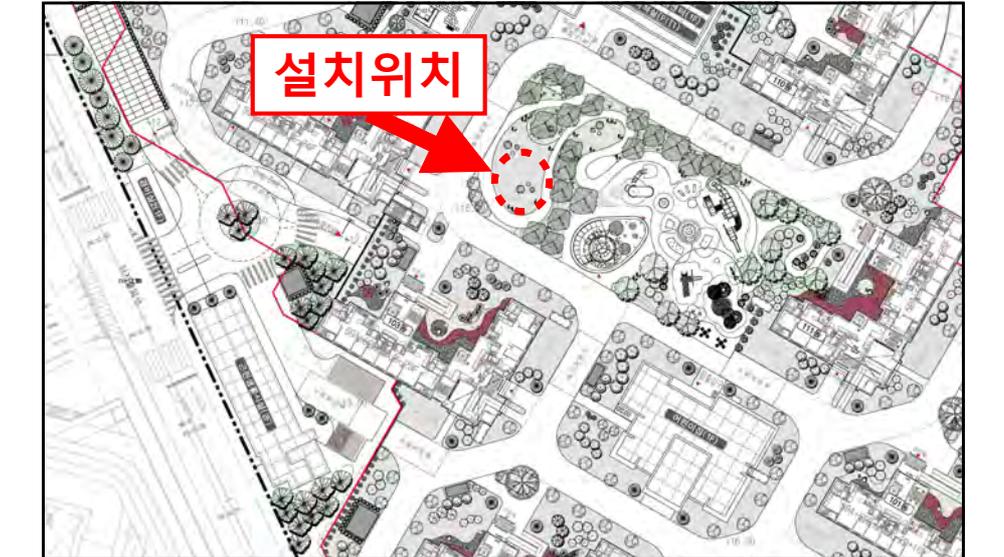
다. 설치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A-3BL 내

라. 공모방식 : 일반경쟁공모

마. 건축물 개요

- ▶ (사 업 명) 화성비봉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행복주택)
- ▶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A-3BL
- ▶ (건 축 주) 한국토지주택공사
- ▶ (건축용도)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 (외장재료) 화강석
- ▶ (건축규모) 28개동, 지하2층~지상25층 / 연면적 136,461.88㎡
- ▶ (준공예정) 2024.12. / (미술작품 설치완료 예정) 2024.12월까지

<p>단지 조감도 & 작품 위치</p>		
<p>중앙 광장</p>		

<p>작품 세부 위치</p>		
<p>작품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중앙의 숲을 테마로 한 잔디광장임을 고려하여 주변 식재공간 및 휴게 공간과 어우러지게 단지 상징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작 · 사방에서 감상이 가능한 형태, 입주민의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작 	

3. 응모 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미술작품을 제작·설치 가능한 자로서 해당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1개 작품을 단독 또는 공동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대표자 기재다. 작가 1인당 1작품만 제출해야 하며, 공동 응모자를 포함 1인으로 본다. 최대 3인 응모인이 공동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 응모로 신청서 제출 시 대표자 선임계(서식 4) 및 공동응모 협정서(서식5)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고, 공동 응모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서약서(서식 3), 작가경력서(서식9)를 포함하여 작성 제출

4. 공모 일정

가.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5. 7. (30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5. 8. ~ 2024. 5. 9. 17시 (2일간)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뉴스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https://www.gg.go.kr/mn/publicart/>)
 - 경기도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문화관광·체육 > 문화예술 > 건축물미술작품 > 미술작품공모 > 공모 공고·결과

다. 현장설명회 : 생략(자료로 대체)

- (현장 설명자료)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자료실)에 게시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https://www.gg.go.kr/mn/publicart/>) • 자료실

라. 질의답변

- 접수, 심의, 일정, 제출서류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 (공모대행기관 : 경기도 예술정책과) ☎ 031-8008-4748
- 현장여건, 공모대상 및 조건 등 작품설치에 관한 사항
 - (공모의뢰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031-250-8358

마. 작품제출(응모) : 이메일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일반사항
 - 모든 파일은 반드시 PDF 파일로 제출
 - 제출자료는 공모지침서 내 서식(서식변경 금지) 사용 제출
 - ※ (4개 제출파일 및 파일명) 전체 50MB 이하로 제출
 - ① 제출파일1(서식 1~5) : [파일명] 파일(1)-성함(대표자명)-작품명
 - ② 제출파일2(서식 6~8) : [파일명] 파일(2)-성함(대표자명)-작품명
 - ③ 제출파일3(서식 9) : [파일명] 파일(3)-성함(대표자명)-작품명
 - ④ 제출파일4(자유서식) : [파일명] 파일(4)-성함(대표자명)-작품명-구조검토서(필요시)
- 제출도서(파일2, 3, 4)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 ※ 제출파일2,3,4에는 성명, 학력 및 소속 등 개인정보 기재 불가(기재 시 응모탈락 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작가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하고, 스캔하여 제출함.
- 마감시간 임박하여 접수 시 유선 문의가 빈번하여 통화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으므로 마감시간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의사항 연락 및 제출 요망

- 제출 서류의 기술적 문제로 변경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문의(PDF 변환 등)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제목은 '화성비봉 A3BL-성함-작품명' 기재 후 송부

- 이메일 : up2date@gg.go.kr 제출 후 필히 유선으로 접수확인 필요 (☎ 031-8008-4748)

※ 유선으로 미확인 시 미접수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접수기관 이메일 도착시간으로 발송자 기준 아님)

- 2시간 전에는 미리 송부하여 확인할 것

바. 심의결과 발표 : '24. 6월 중순 예정(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홈페이지(공고문 게시 사이트)에 발표

○ 심의기준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음.

사. 이의신청 : 심의결과 발표일을 포함하여 7일간(휴일 포함)

○ 이의제기 시 선정작가 소명 후 재심의

○ 접수처는 결과발표 공고문에 별도 명시하며, 접수기간 도과 시 접수 불가

아. 계약일시 : 건축주와 당선작가가 별도 협의하여 결정

자. 작품설치 : 2024. 12월 까지

○ 작품 설치의 구체적인 시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작가와 협의·조정하여 결정

차. 상기 공모일정은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반환 불가)

- 제출서류는 번호순으로 4개 파일로 구분해야 함.(총 50MB이하)
 - ① 1~5번을 1개의 PDF파일로 변경 / ② 6~8번을 1개의 PDF파일로 변경
 - ③ 9번을 1개의 PDF파일로 변경 / ④ 10번을 1개의 PDF파일로 변경
- 제출서류는 작가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하고(서식 6, 7, 9 제외)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파일1,2,3,4-성함(대표자명)-작품명
- 반드시 제출서식을 사용
- 제출도서(파일2, 3, 4)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구분	구분	규격	내용	
파일 1	1	응모신청서	A4	필수 제출서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A4	필수 제출서류
	3	서약서	A4	필수 제출서류
	4	대표자선임계	A4	공동응모 시 제출서류
	5	공동응모협정서	A4	공동응모 시 제출서류
파일 2	6	작품 설명서	A4	필수 제출서류
	7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A4	필수 제출서류
	8	도판(이미지 파일)	A1	필수 제출서류(도판의 별도 제작 불요)
파일 3	9	작가경력서	A4	필수 제출서류
파일 4	10	구조검토서	A4	(필요시 제출)

나. 도판 제출(이미지 파일 1개)

- 도판의 규격은 841×594mm(A1규격)로 가로 또는 세로로 작성함.
- 도판에는 평면도·정면도·배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투시도(조감도)·배치도를 표현하되 작품의도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작품명, 재질, 외피의 색상, 작품 및 좌대의 규모(가로×세로×높이; 단위 mm)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해야 함.
- 단, 투시도(조감도)의 경우 배경(도판상의 건물, 녹지, 지반, 바닥 등 해당작품을 제외한 것)을 흑백으로 표현하되, 작가가 시공하는 경계석, 좌대(경계석, 좌대내의 잔디 포함)는 컬러로 표현할 수 있음.
- 작품 이미지는 반드시 과장되지 않도록 표현되어야 하며, 작품 주변에 사람을 표현할 시 작성자를 인지할 수 없도록 그림자 형태로만 작품 주변에 두어 작품 규모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함.(배경투시도에만 반영하고 사람의 크기는 남자 175cm, 여자 160cm로 한다.)
 - 만약, 선정된 작품의 이미지와 표기에 명백한 차이가 있거나 모호할 경우, 이미지를 기준으로 도서의 재작성을 요구하므로 도판작성 시 특히 유의해야 함.
- 배경투시도는 도판예시를 참고하여 크기 250×200mm(가로×세로) 또는 200×250mm(세로×가로) 이하로 도판의 우측하단에 표현함.
- 모든 도판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해야 함. 다만, 한문이나 영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작품명 제외)
- 도판의 여백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채색이나 다른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도판예시]



<도판예시>



<배경투시도 규격>

* 투시도(조감도) 규격 엄수(허용오차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작품 설명서**(총 10쪽 이내로 작성, 작가의 성명, 개인정보 표기 금지)

- 작품명, 규격(크기, mm단위), 재료(재질), 제작의도(주제 포함), 작품 총 중량(기초, 좌대 등 포함), 작품도면, 조명계획, 작품 설명, 시공방법, 안전성 검토, 유지·보존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함.
- 작품 의도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기법으로 자유롭게 작성하고, 재질, 색상, 작품 및 좌대 규모(가로×세로×높이, 단위 mm) 등을 알기 쉽게 표현하며, 그 내용은 모형 사진도 가능함.
- 건축물과의 조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근경·원경·야경을 축척에 맞게 표현하고 사실감 있게 작성하며, 과도한 그래픽 표현으로 실제 설치될 크기 및 색상보다 작품이 과장되지 않도록 작성함.
- 배경에 스케일을 위한 인물 등 삽입 시 얼굴, 옷 등의 표시 없이 투명화 하여 표현함.
- 작품 설명판은 시민들의 작품 감상과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쉽고 간결하며 문법에 맞게 작성하고, 작품 감상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형태로 계획하여 작성함.

- 좌대를 포함한 작품높이 5m 이상일 경우 또는 구조검토를 하였을 경우에는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작품설명서에 작성하고, 구조검토서는 파일4로 제출함.

※ 구조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 구조검토서 제출시 파일4로 첨부하여 제출

(구조검토서 미제출 시, 제출을 조건부로 당선작 선정이 가능함)

(파일명) 파일4-성함(대표자명)-작품명-구조검토서

- 인공지반 허용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작품의 총 중량(기초 및 좌대 등 포함)과 면적당 하중 및 허용 하중 적합여부를 설명서에 작성함.

- 모든 도면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한문이나 영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사용함.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공고한 작품별 설치금액과 사용금액의 총액이 일치하도록 작성함.

- 창작비, 제작비, 설치비, 부대비, 필요 시 구조검토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함.

- 서식 내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A4 규격의 지정 양식으로 작성함.

○ 그 외 서류는 지정양식에 성실히 작성하고,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함.

라. 제출 유의사항

○ 심의과정 중 제출자료의 증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는 응모작가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작가는 이에 응해야 함.

○ 공동응모 시 성명은 대표자 성명으로 작성함.

○ 제출기간(시간) 도과 후에는 제출서류의 수정이 불가함.

○ 응모자의 인터넷 여건으로 인한 접수 오류가 발생 시 미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하고 이의제기 하지 못함.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예술정책과(031-8008-4748)로 연락 바람.

6. 심의 방법

- 가.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별도로 일정을 정하고, 위원회 심의기준 등에 따라 평가하여 작품을 선정함.
- 심의결과에 따라 당선후보작 1작품, 차순위 후보작 1작품 총 2작품 선정함.
 - 선정된 당선후보작은 일부 수정, 개선,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본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되는 경우, 동 합의사항 이행을 조건부로 선정 가능함.
 - 심의결과에 따라 당선후보작 또는 차순위 후보작이 없을 수 있음.
- 나. 당선작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선자가 제작 및 설치 권한을 포기할 경우, 후보작(차순위자)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할 수 있음.
- 다. 심의결과, 최종 당선작이 없을 경우 공모의뢰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과 협의에 따라 재공모 등 작품선정 방식을 결정.
- 라. 선정 작품 및 응모 작품 관련 별도의 시상금 및 제작비 지원은 없음.

7. 공모 조건

▣ 응모자는 본 <공모지침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모를 위해 공개한 현장자료를 모두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 작품을 계획해야 함.

가. 일반 지침

- 낙선작 제출파일은 최종 발표일 후 3개월 이내에 폐기처분 함.
 - 모든 응모자는 본인의 응모작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답변요청을 받았을 시 이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선이 취소 가능함.
 - 제출된 응모작은 이의제기 접수 등을 위해 일반에 공개될 수 있음.
- ※ 응모 작가는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작품계획안의 공개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응모자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당선 시 설치 및 사후관리 등 행정행위를 이행해야 함.
- 사업비에는 설치비, 부대비, 작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필요 시 구조계산서에 소요되는 비용, 제작비 등이 모두 포함되며, 건축주가 별도로 부담하거나 지원하지 않음.

나. 작품 제작방향 및 건축주 추가요구사항

【작품 제작방향】

- 응모작은 응모작가 본인의 구상에 의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작품 구상에서 제작 및 설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본인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하여야 함.
 - 모작(본인작품 모작 포함), 저작권 침해, 신청서 등의 허위사항 기재 등을 이유로 작품 심의에서 제외 및 당선작에 대한 취소 등이 가능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자신의 과거 작품*이나 이를 일부 변경·차용한 연작·시리즈 작품 불가.
 - * : 공공조형물, 건축물 미술작품 등으로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작품에 한하여 심의위원회가 결정함.
- 응모자는 작품 설치 위치의 ‘장소성’을 작품에 반영하여야 하며 작품에 공공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함.
- 사회성과 예술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 장소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건전하고 주변지역 정서에 부합되는 작품이어야 함.
- 옥외에 설치하는 작품의 경우 옥외 환경에 장기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내구성 및 입주민 등을 고려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미끄럼 방지 처리 및 모서리 모따기 처리 등)
- 작품의 설치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함.

- 작품 설명판을 포함하여 제작하고,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에 포함하며, 작품설치 시 필요한 별도 장비는 건축주가 지원하지 않음.
- 좌대가 필요한 경우 작품설치 시 좌대를 포함하여 제작하며, 작품 크기에 좌대를 포함한 크기로 함.

【건축주 추가요구사항】

- 미술작품은 해당 지역 및 단지의 특색을 고려하고 설치위치 주변 환경(조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미술작품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대중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변형 등 거부감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작가에게 일임한다.
- 미술작품 시공범위는 일반적으로 작품의 본체(작품설명안내판 포함)와 좌대 및 기초까지로 함.
- 미술작품을 야간에도 감상할 수 있는 조명 설치계획을 포함하기를 권장하며, 조명 설치 시 컨트롤박스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
- 당선된 미술작품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주(공사 감독)가 요구하면 구조전문가의 자문을 득해야 함.
- 미술작품은 일반인의 접근 및 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하자발생, 파손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어야 함.
- 규모 및 하중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주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검토서 또는 구조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인공지반 위 작품의 허용 하중은 1.2ton/m²이며, 면적 당 하중과 총 중량을 작품설명서에 표기함.

※ 작품의 면적당 허용 하중 1.2ton/m² : 기초 및 좌대 등을 포함한 작품의 무게는 1.2ton/m²를 초과할 수 없음. 예)기초바닥 면적이 10m²이며, 작품무게가 10ton인 경우 → 1.0ton/m² (조건충족)

8. 계약 사항

▣ 계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공모 의뢰기관)와 작가간의 수의계약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가 통보한 심의결과로 계약 체결함.

나. 당선 작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 체결 시 서약서, 계약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 시 필요 서류는 추후 LH에서 당선작가에게 별도 송부예정

다.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함.

라. 당선 작가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보수보증기간 (3년) 내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함.

9. 당선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최종당선자는 해당 작품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이 있음.

나. 작품 설치에 필요한 기초공사비, 기반시설(전기 등), 운반비, 조명, 명판, 좌대 설치, 액자틀 등 일체 부대비용은 미술작품 설치비용에 포함됨.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품수정, 안전성,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이를 참고하여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은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공모 의뢰기관)에 있으며,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출된 작품의 사진·그림·도면 및 기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전시·안내·홍보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그 외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마. 당선자는 작품에 대한 명판(작품명, 작가명, 작품해설)을 제작·설치해야 함. (현장설명서 예시 사진 참조)
- 바. 당선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작품을 제작·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본 공모의 당선사실이 무효화 될 수 있음.
- 사. 작가의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기존 시설물의 파손·변형 등이 발생할 경우, 작가는 본인의 책임·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함.
- 아. 사업 현장에서 미술작품 자재운반, 제작, 설치과정 등 모든 제반 사항에 있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원 관련 사항은 작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가. 응모 신청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없음.
 - 작품설명서 작성기준 및 공모지침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공모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대한 허위사항이 있는 경우
 - 심의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작품을 모방한 경우
 - 기타 심각한 법률위반사항이 있어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나. 당선 작가가 결격사유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작가 소명서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심의 위원회 심의로 결정함.

- 다. 작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선이나 작품 계약을 취소하고, 만약 작품 설치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당선작가가 부담함.
- 라. 당선작 계약 이후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응모자는 본 공모의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마. 응모자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방법·기준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심의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의 해석에 따름.
- 바. 당선작으로 설치된 작품이 최초 공모심의 등을 위해 제출한 조감도 등 기획안과 색감, 질감 등이 현저히 다르거나 중대한 차이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작품의 보완요청 및 당선 취소를 할 수 있음.
- 사. 당선자를 제외한 작가가 제출한 일체의 전자문서는 반환하지 않고 삭제 등의 방식으로 경기도가 처분함.
- 아. 본 공모지침서는 경기도(예술정책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공모 의뢰 기관)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음.

서 약 서

본인은 “화성비봉 A3BL(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공고문,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 규정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심의를 위해 구성한 심의위원과 심의방법 및 심의기준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당선작 선정 및 작품의 제작·설치까지 건축주의 추가 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공동응모자가 있을 시, 작가별 각 1매씩 작성 제출

2024. .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대표자 선임계

사업명 : 화성비봉 A3BL(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본인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화성비봉 A3BL(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4. . .

○ 공동응모 대표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공동응모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공동응모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5]

공동응모 협정서 (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화성비봉 A3BL(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를 ()와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대표자 정보) 공동응모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다.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성 명 : (생년월일:), 주소 :
2. 성 명 : (생년월일:), 주소 :

제4조 (대표자의 권한) 대표자는 발주처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작품 제작·설치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책임) 공동응모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상호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구성원 출자비율) ①공동응모자간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000 : %
2. 000 : %
3. 000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응모의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1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10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2조 (탈퇴) ①구성원 중 대표자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 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경기도청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3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4. 0. 0.

○ 공동응모 대표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공동응모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

※ 상기 서식은 예시이니 당사자 간 협의하여 자유롭게 협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6]

작품 설명서

작 품 명			
작품크기 (가로×세로×높이, m단위)		작품하중 (총중량, m ² 당 하중)	
작품재질			
작품 조감도(배경투시도)			
10매 이내로 작성			

작품도면 (필요에 따라 서식 수정 가능)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배치도

작 품 설 명

1. 제작의도

2. 작품설명(주제포함)

3. 작품시공방법(자세하게, 조명내용 포함)

4. 안전성 여부 검토

5. 유지·보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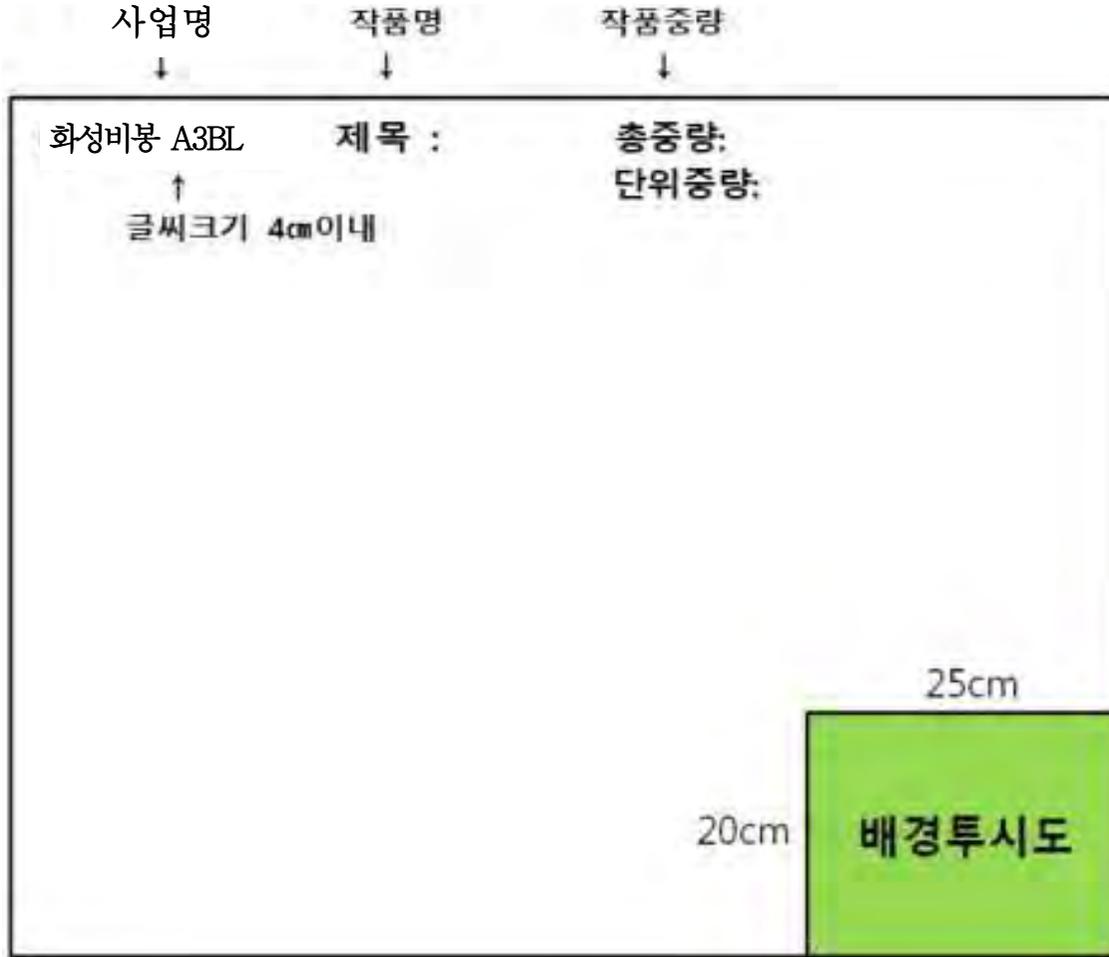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미술작품	작품명				
	크기	재질			
사용금액 내역	구분	가격	비율	세부사항	
	창작비	작가창작비(Artist Fee)	천원	%	
		모형 및 원형제작비	천원	%	모형제작비 천원 원형제작비 천원
	제작비	재료비	천원	%	
		인건비	천원	%	
	설치비	작품 운반비	천원	%	
		현장 설치비	천원	%	
		기초 및 부대공사비	천원	%	
	대행수수료		천원	%	
	행정비용				심의도서제작비 천원
					모형제작비 천원
			천원	%	기 타 천원
	기타				보험료 천원
					조 명 천원
					분 수 천원
		천원	%	기 타 천원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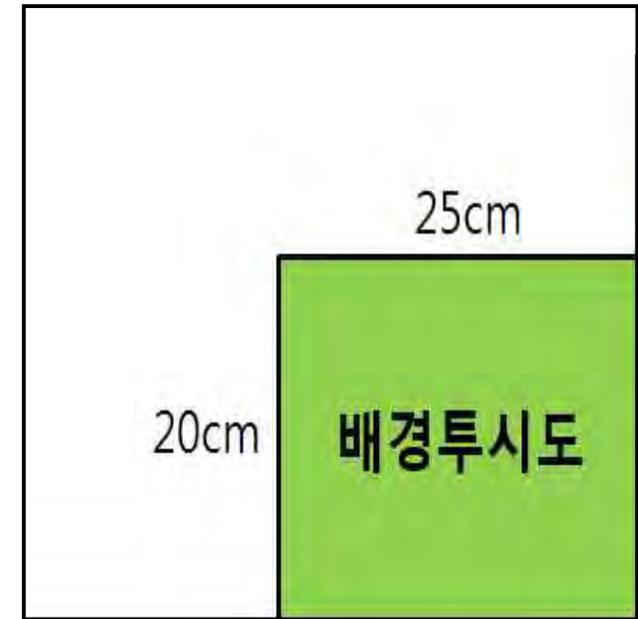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식 8]

도 판 (예시)



<도판예시>



<배경투시도 규격>

작가경력서

작가경력	<p>주요경력, 수상 및 개인전·단체전 내역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경력 및 수상내역은 연/월까지 기재※ 공동응모자가 있을 시, 작가별 각 1매씩 작성 제출※ <u>성명, 학력 및 소속 등 개인정보 기재 불가함.(기재 시 응모탈락 될 수 있음.)</u>
작품경력	<p>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작품 이미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10작품 이내로 제출</p>
공공미술 설치경력	<p>설치 개수, 설치 위치 등</p>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주택]() - [직장]() -	휴대폰	

이의 신청 내용	대 상 작 품	화성비봉 A3BL(공동주택) 미술작품 당선후보작
	사 유	

- # 별 첨 : 1. 작품 이의신청자 신분증
2. 이의신청 증빙자료(유사작품 원작자의견서, 작품사진 등)

2024. . .

신 청 인 : ○ ○ ○ (인 또는 서명)